

제827호

무주 공보

2026. 9. 2.(수)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조 례

-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 「무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 「무주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45

규 칙

-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52

고 시

-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 시행계획(부분 2차) 승인 고시 59

무주군 공고 제2026-948호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및 건강증진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나. 건강증진사업 지원 및 주민 참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12조)

라. 협의회 및 위원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9.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우) 55515
- 전자우편: miji1222@korea.kr
- 전화: 063-320-8229
- 팩스: 063-320-8239

4. 붙임

가. 의견서(서식)

나.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 전화번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건강증진사업계획)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생애주기별·건강취약계층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및 건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홍보 및 재료비 등 사업 추진 경비
2. 건강증진사업 또는 주민 참여사업의 우수 참여자에 대한 상장, 상패, 시상금 또는 부상
3.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주민 참여사업의 운영) 군수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경진대회, 캠페인 등 주민 참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무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무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947호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군수의 책무, 정의, 금주구역의 지정, 음주폐해 보호사업,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음주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금주구역의 지정, 음주폐해 보호사업, 교육 및 홍보, 과태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7조)

다.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9.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우) 55515
- 전자우편: miji1222@korea.kr
- 전화: 063-320-8229
- 팩스: 063-320-8239

4. 붙임

가. 의견서(서식)

나.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 전화번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음주가 금지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

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계도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위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무주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축제·행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금주구역의 지정을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폐해 보호사업)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폐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및 재활서비스 연계 사업
2. 음주폐해로 발생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상담 및 연계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상담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금주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무주군 공고 제2026-946호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무주군 영양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군수의 책무,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영양관리사업 등 지원사업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영양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나.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영양관리 조사,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 다.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 7조)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9.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우) 55515
- 전자우편: yjs2025@korea.kr
- 전화: 063-320-8241
- 팩스: 063-320-8239

4. 붙임

가. 의견서(서식)

나.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 전화번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영양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영양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 조사) 군수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영양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에 의거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모호함을 방지하고 구체화하여 알기 쉽게 해석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제1항, 제2항)

나. 평생교육진흥사업 정비(안 제3조)

다.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문 이동(안 제4조)

라.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 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간사 등

마. 평생학습관의 설치, 사업,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바. 강사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제5항)

사.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9조)

아. 홍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0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02.~ 9. 2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6, 무주군평생교육원
- 전자우편: silk0509@korea.kr
- 팩스: 063-320-2075

5.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인구활력과 평생교육팀(전화: 063-320-2254, 팩스: 063-320-2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공공성 함양을 위한 주민교육
4.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
5.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 사업
6. 지역·마을·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평가 등을 위한 사업
8. 평생교육 정보공유를 위한 연수 및 세미나
9.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제, 축제 및 행사
10.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4조(문해교육의 지원)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2.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등의 지원
3. 그 밖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소속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무주군의회 의원

나. 무주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다. 평생교육 전문가

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마.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바.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는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무주군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

2. 위치: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6

제14조(사업 등) ①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업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종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관내 평생교육 인적자원 발굴 및 개발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 산하에 권역 또는 읍·면 단위로 지역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 인력) 군수는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수강 신청) ①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학습비의 징수 및 면제)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비는 별표의 제1호에서 정한 학습비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별표의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징수하지 않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⑤ 학습비의 반환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18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 상황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강과목이 폐지된 경우

제19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읍·면별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3에 따라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센터를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운영한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홍보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원 등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가를 모집·활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주민, 평생교육 관련 행사 참가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학습비 상한 및 면제 기준(제17조 관련)

1. 학습비 상한 기준

교육프로그램 구분	기준	요금(1인/월)
가. 기술·취미·어학·문화 등 일반 과정	주당 4시간 미만	10,000원 이하
	주당 4시간 이상	20,000원 이하
나. 일반 과정(고급·심화반 개설 시), 전문 과정 및 특화 과정	주당 4시간 미만	20,000원 이하
	주당 4시간 이상	40,000원 이하

※ 비고: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자가 부담한다.

2. 학습비 면제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의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아.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부모 및 그 자녀

자. 차상위계층인 한부모가족

※ 비고

1) 학습비의 면제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학습비의 면제는 매년 1인당 2과목으로 한정한다.

「무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무주군수

「무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를 현행 용어로 개정하고 세분화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

2. 주요내용

- 가.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용어와 내용 세분화
- 나. 관리비용에 대한 주체 구체화(안 제14조)
- 다. 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 개최 체계화(안 16조~19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16,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
- 전자우편: imseonyeong@korea.kr
- 팩스: 063-324-90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

(☎전화 063-320-25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조례명: 「무주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자대표협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동물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시설의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 조치) ①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범위 및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
2.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 징수)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 비용) ①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마을상수도의 관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 비용은 전기료·약품비·소모품비 등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구별 균등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 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협의회의 설치) ①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 비용의 분담 및 그 밖에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는 시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한다.

제1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제14조에 따른 관리 비용의 가구별 분담액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협의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

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정하는 사항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해당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가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상수도의 관리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회 대표자에게 마을상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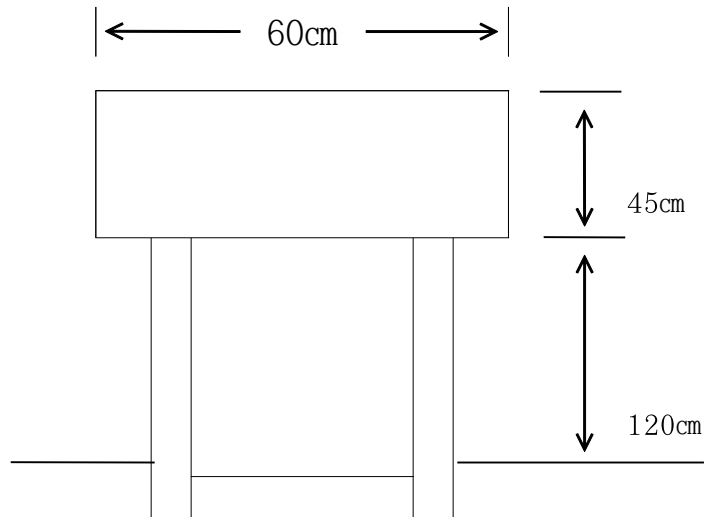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자대표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



재질 및 두께: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탕 색: 흰색

글씨: 청색

○ 내용문

알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또는 마을상수도)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위치: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 연락처: 무주군 담당부서 (전화)

[별지 제1호서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관 리 번 호		제 호									
구분	항목	내 역									
일반 현황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읍·면 리 마을									
	협의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준공 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투자액 (만원)	구 분	내 역	일 자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주민부담	기 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최초사업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 종류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									
	시설의 유형	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									
	취수 시설	보유시설	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집수정 1								
			집수정 2								
			양수모터1								
	양수모터2										
	정수 시설	보유시설	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 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 종 별 총연장(m)		
			관중	직경	연장	관중	직경	연장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총 계			m			m	총계 :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 1일 급수량 : 리터					
	제한급수	1차 :		2차 :		3차 :		계 : 일간			
수질 검사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개 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공자	개량 내용					
수원 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 시설폐지의 경우는 뒷면에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무주군 제 호	점검일자: . . . 점 검 자: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 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 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 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 상태			
○ 관로 관리 및 파손 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 상태			
오염물 제거	취수원 부근		
	배수지 부근		
기 타			

※ 매 분기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제7조제2항 관련)

관리번호	무주군 제 호	점검일자: . . .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 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 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			

무주군 공고 제2026-951호

「무주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무주군수

「무주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안 제4조)
- 라. 설치기준 등(안 제5조)
- 마. 우선주차구역 이용(안 제6조)
- 바.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사. 교육, 홍보 및 협력(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전자우편 : gold02@korea.kr
- 팩스 : 063-320-23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전화 063-320-2321, 팩스 063-320-2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조례명: 「무주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바.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사람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예우를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

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무주군청 및 소속기관 청사
2. 읍·면 행정복지센터
3. 무주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4. 무주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5. 그 밖에 군수가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설치·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가 50면 이상인 시설에 1면 이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 규모 및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달리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곳 등 접근성과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바닥면에 별도의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 또는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증 등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홍보 및 협력) ① 군수는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과 우선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보훈단체 및 시설관리자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 도안

(제5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안내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700mm

나. 색 상: 남색, 흰색, 적색

2. 도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벌 삽입)

가. 바닥면 표시



나. 안내표지판



무주군 규칙 제1279호

입법상황보고가 완료된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2일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

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자치
행정과장 및 산업경제과장, 직속기관인 보건행정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
장으로 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

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의안의 의결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의 경우는 공포의결과 재의요구로 구분한다.

④ 위원은 제3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등) ① 의안은 군 본청의 실·과장 및 보건의료원·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이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안설명) 의안제출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제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의안 소관 담당팀장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9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해당 의안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무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조례안은 의안 소관 부서의

장이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을 의뢰하고,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군의회에 제출

2. 의원발의 또는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군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제6조제4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제 회, 년 월 일
의 안 명			
의결주문			
심의내용	별 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가	부	
의 장	군 수				
부의장	부 군 수				
위 원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제12조 관련)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① 안 건			
② 소 관 부 서		③ 의안제출자	
④ 일 자			
⑤ 장 소			
⑥ 참 여 위 원			
⑦ 심 의 내 용	별지와 같음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2조에 따라
제 차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한다.

년 월 일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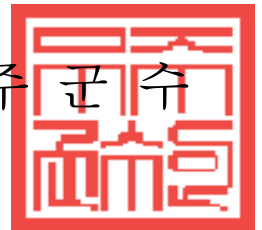
일 자	년 월 일			장 소	무주군청
참여대상	재적 위원	참석	불참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 시행계획(부분 2차) 승인 고시

무주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의 시행계획(부분 2차) 승인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일

무 주 군 수



1. 사 업 명: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
2. 사업목적: 안성면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에 부족한 생활 SOC시설
및 문화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 업 비: 15,000백만원(국비 10,500, 도비 1,350, 군비 3,150)
4. 사업기간: 2022년 4월 25일 ~ 2028년 2월 28일(7개년)
5. 사업시행자: 무주군수(위탁수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6.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구 분	사 업 명	사업내용	비 고
기초 생활 기반 확충	• 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	• 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 • 문화·교육·교류 활동 지원 - 대지면적 : 7,150㎡ - 건축면적 : 1,369.9㎡ - 연면적 : 1,996.58㎡ - 지상 2층/주민공동이용시설	• 부분 1차 승인("25.8.)
	• 어울림센터 서비스 기능개선	• 어울림센터 서비스 기능개선 • 문화·여가 기능 강화 - 세미나실, 다목적 광장 기능개선 등 리모델링(지상2층, A=364.96㎡)	• 금회 부분2차 승인
지역 경관 개선	• 안성 초등학교 안전망 구축	• 안성초등학교 안전망 구축 - 보행로 확장 및 신설·정비 200m	• 금회 부분2차 승인
지역 역량 강화	•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건강돌봄 프로그램 • 청장년 문화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 창의학습 프로그램 • 영유아 놀이문화 프로그램	• 부분 1차 승인("25.8.)
	•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확대	• 찾아가는 연령별 생활서비스 • 배후마을 미디어 활성화 • 주민주도 배후마을 지역문제 해결 • 지속가능한 배후마을 프로그램	• 부분 1차 승인("25.8.)
	• 주민 인재 육성	• 주민인재 육성 • 공동체 자립 활성화 • 사업 운영체계 구축	• 부분 1차 승인("25.8.)
부대 비용	• 기본계획비	• 기본계획비	• 부분 1차 승인("25.8.)
	• 세부설계비	• 세부설계비	• 부분 1차 승인("25.8.)
	• 공사감리비	• 공사감리비	• 금회 부분 2차 승인
	• 사업관리비	• 사업관리비	• 금회 부분 2차 승인
	• 경영지원비	• 경영지원비	• 부분 1차 승인("25.8.)
	• 기타부대비	• 기타부대비	• 부분 1차 승인("25.8.)

나. 사업의 구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외 6개리

7. 사업의 효과

가. 중심지 내에 부족한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기존 기능 시설 강화
및 통합거점 마련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

나. 주민들의 수요에 기반한 부족한 생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중심지
의 기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 기타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촌활력과(063-320-2601)에 비
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